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과 재난·안전관리, 민원 등 격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고,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 국가기관과 인사교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 잘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우대 강화

- 1)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우수자 및 해당 분야의 관련 정부포상 공무원 등에 대해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 2)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 3)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부여토록 근거 마련(안 제35의6 신설)

나.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의2)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일부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시험 합격자 등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 가능토록 함

다. 결원보충 가능 사유에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안 제42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을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를 “효율적 활용 등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로, “관하여”를 “관한 사항과 공직문화 수준을”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통합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인사정책””을 ““균형인사정책””으로, “통합인사기본계획”을 “균형인사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통합인사정책”을 각각 “균형인사정책”으로 한다.

제31조제8항 전단 중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을 “경우”로, “계급에 따라”를 “직무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요구,”를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의2제5항 전단 중 “제1항제2호나목”을 “제1항제2호”로, “국무총

리”를 “특별승진 심사대상 또는 국무총리”로 한다.

제35조의5제3항제2호 중 “공무원 또는”을 “공무원,”으로, “돈보인”을 “돈보인 공무원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민원 또는 고충민원 등을 상시 처리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1년

제35조의5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정부포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소속 장관은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및 개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그 밖에 본부 및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포상 실적과 관련하여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유학휴직·연수휴직 및 자기개발휴직 허용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제42조제3항제2호 중 “출산휴가와”를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출”을 각각 “전출하거나,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출”로 한다.

3.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제48조의 제목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기관간의 인사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호간”을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간(이하 “교류기관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기관 상호간”을 “교류기관간”으로 한다.

제57조의7제1항 중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를 “자료 등을 토대로”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통합인사정책”을 “균형인사정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승진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승진심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출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점검·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지원) ----- 따른 ----- 효율적 활용 등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 관한 사항과 공직문화 수준을 ----- ----- -----.		
제8조의2(통합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통합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인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인사정책의 중장기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통합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통합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균형인사정책”----- ----- 균형인사기본계획 ----- ----- -----. ② ----- -----. 1. 균형인사정책----- ----- 2. 균형인사정책----- ----- 3. ----- 균형인사정책----- -----		

③ ~ ⑦ (생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⑦ (생략)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⑨ ~ ⑮ (생략)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경우 -----

----- 직무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
-----.
-----.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

1. -----
--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
는 경우

2. (생략)

② ~ ④ (생략)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
④ (생략)

⑤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 ~ ⑪ (생략)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2호-----

--- 특별승진 심사대상 또는 국
무총리 -----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35조의5(근속승진 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신설>

<신설>

④ (생략)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

-----.

-----.

1. (현행과 같음)

2. -----
----- 공무원, -----
----- 돈보인
공무원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민원 또는 고충민원 등을 상시 처리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1년

④ (현행과 같음)

⑤ -----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⑥ ~ ⑩ (생략)
 <신설>

----- . 다만, 제3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속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 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정부포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소속 장관은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및 개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생략)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생략)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 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그 밖에 본부 및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포상 실적과 관련하여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유학휴직·연수휴직 및 자기개발휴직 허용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제42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2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으로의 전보) ① (생 략)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
조에 따라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임
용일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
(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
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
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전출
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
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으로의 전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
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장이 정하는 경우

③ -----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
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
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
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
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
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
용된 날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
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
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
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생략)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
류) ①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32
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

-----.

----- 전출하거나, 육
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출---.

④ -----

-----.

----- 전출하거나, 육
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
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출---.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기관간의 인사교류) ① --

----- 상호

간의 인사교류계획(이하 “인사
교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
사혁신처장은 제2항 후단에 따
른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인사
교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
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
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2. (생략)

② ~ ⑥ (생략)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질병휴직
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
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
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간(이하 “교류기
관간”이라 한다)-----

-----.

-----.

1. -----
----- 교류기관간-----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

-- 자료 등을 토대로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

호의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u>통합인사정책</u>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③ (생략)	----- ----- ----- -----. 1. (현행과 같음) 2. <u>균형인사정책</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294